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71 호 2026. 7. 23.(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59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1호선 외 5개 노선 및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60호[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61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62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77호[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4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1호선 외 5개 노선 및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1호선 외 5개 노선 및 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나. 명칭 :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시설[도로(중2-571호선 외 5개노선) 및 소공원(141)]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등급	등 급			연 장(m)	면 적(m ²)	비 고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571	16~20	260	4,333	
중로	3	442	5.0	18	94	
소로	1	139	10.5~14	310	3,517	
소로	2	91	8	273	2,195	
소로	2	648	8	91	731	
소로	2	656	8	12	120	

나. 소공원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141	소공원	북구 신천동 18번지 일원	1,386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태정이앤씨 대표이사 정 우 열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3층 303호(성남동, 롯데캐슬 스카이)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 6. 29 ~ 2027.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신천동	4-6	답	80.0	80.0	김0오외 4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동 1403호(전하동, 전하아이파크)				변경 없음
2	신천동	5-9	대	135.0	135.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3	신천동	5-10	대	136.0	13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4	신천동	5-11	전	169.0	169.0	김0오외 4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동 1403호(전하동, 전하아이파크)				변경 없음
5	신천동	5-12	전	282.0	282.0	김0오외 4인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02동 1403호(전하동, 전하아이파크)				변경 없음
6	신천동	6-6	답	547.0	54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	신천동	6-7	전	189.0	18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	신천동	9-2	전	184.0	18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9	신천동	10-6	전	154.0	15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0	신천동	10-8	전	32.0	3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1	신천동	11-5	전	158.0	15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2	신천동	11-7	도	19.0	1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3	신천동	12-10	대	148.0	14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4	신천동	12-12	전	8.0	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5	신천동	12-13	전	159.0	15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16	신천동	14-8	대	2.0	2.0	김0수	울산시 남구 신정동 292-10				변경 없음
17	신천동	16-2	묘	15.0	15.0	최0곤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126블럭1롯데 평창리비에르1차 110동 102호				변경 없음
18	신천동	17-8	답	419.0	419.0	김0수외 3인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159 (신정동)				변경 없음
19	신천동	17-9	답	566.0	566.0	김0수외 3인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159 (신정동)				변경 없음
20	신천동	17-10	답	678.0	67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1	신천동	18	대	236.0	23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2	신천동	18-3	대	8.0	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3	신천동	18-4	대	54.0	5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4	신천동	18-5	도	97.0	97.0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없음
25	신천동	18-6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없음
26	신천동	18-7	답	10.0	1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7	신천동	18-8	답	86.0	8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8	신천동	19-2	답	227.0	22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29	신천동	23-2	묘	438.0	438.0	하0규	대구 서구 내당동 215-30				변경 없음
30	신천동	24-2	답	78.0	78.0	이0길	울산 중구 우정동 385 선경아파트 2동 803호				변경 없음
31	신천동	24-4	답	644.0	644.0	이0길	울산 중구 우정동 385 선경아파트 2동 803호				변경 없음
32	신천동	25-6	답	2.0	2.0	주식회사제이 00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0, 한석빌딩 6층				변경 없음
33	신천동	25-7	답	65.0	65.0	정0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43-2 현대하이페리온 2단지 201-1403				변경 없음
34	신천동	25-3	답	13.0	13.0	주식회사제이 00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0, 한석빌딩 6층				변경 없음
35	신천동	26-8	과	1.0	1.0	정0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1, 108동 901호(유곡동,울산유곡푸르지 오)				변경 없음
36	신천동	26-9	과	1.0	1.0	정0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1, 108동 901호(유곡동,울산유곡푸르지 오)				변경 없음
37	신천동	27-1	과	270.0	270.0	김0영외 1인	울산 남구 옥동 586-8 서강필그림빌라 3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변경 없음
38	신천동	27-7	과	93.0	93.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39	신천동	27-8	도	59.0	59.0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없음
40	신천동	27-10	과	739.0	739.0	김0영외 1인	울산 남구 옥동 586-8 서강필그림빌라 3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변경 없음
41	신천동	28-1	전	312.0	312.0	김0수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8길 80-4 (다운동)				변경 없음
42	신천동	29-5	답	1.0	1.0	정0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동3길1, 108동 901호(유곡동,울산유곡푸르 지오)				변경 없음
43	신천동	58-19	전	238.0	238.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변경 없음
44	신천동	58-20	묘	157.0	157.0	박0숙외 4인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186-2 남운럭키맨션 104동 205호				변경 없음
45	신천동	58-21	묘	86.0	86.0	장0순외 1인	울산 북구 양정동 533-1 삼창에이스 808호				변경 없음
46	신천동	58-22	묘	82.0	82.0	장0순외 1인	울산 북구 양정동 533-1 삼창에이스 808호				변경 없음
47	신천동	262-7	전	21.0	21.0	김0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7번길 6, 201동 702호 (달동, 삼성아파트)				변경 없음
48	신천동	262-8	전	28.0	28.0	정0선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55, 에이동 608호 (태화동, 동덕현대아파트)	가야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3	근저당 권/지 상권	변경 없음
49	신천동	262-9	전	118.0	118.0	정0선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55, 에이동 608호 (태화동, 동덕현대아파트)	가야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3	근저당 권/지 상권	변경 없음
50	신천동	262-11	과	1.0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변경 없음
51	신천동	262-12	전	170.0	170.0	김0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17번길 6, 201동 702호 (달동, 삼성아파트)				변경 없음
52	신천동	262-14	전	16.0	16.0	정0선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55, 에이동 608호 (태화동, 동덕현대아파트)				변경 없음
53	신천동	263-1	전	1.0	1.0	주식회사제이 00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40, 한석빌딩 6층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4	신천동	264-1	전	201.0	201.0	김0규	울산 동구 서부동 238-29 현대패밀리명덕아파트 103동 803호				변경 없음
55	신천동	265-2	묘	448.0	44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56	신천동	265-3	묘	37.0	3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57	신천동	267-5	임	101.0	101.0	장0순외 1인	울산 북구 양정동 533-1 삼창에이스 808호				변경 없음
58	신천동	279-24	도	63.0	63.0	울산광역시 북구					변경 없음
59	신천동	279-25	답	128.0	12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0	신천동	279-26	답	89.0	8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1	신천동	279-27	답	49.0	49.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2	신천동	279-28	답	40.0	40.0	이0선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27번길 8 (신정동)				변경 없음
63	신천동	279-29	도	16.0	1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4	신천동	279-30	답	98.0	98.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5	신천동	281-2	답	237.0	23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6	신천동	283-4	답	343.0	343.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7	신천동	285-8	전	126.0	12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8	신천동	288-8	대	135.0	135.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69	신천동	288-10	대	10.0	1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0	신천동	288-11	대	51.0	51.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1	신천동	288-12	대	42.0	4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2	신천동	288-13	대	142.0	14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3	신천동	288-15	대	1.0	1.0	박0정의 3인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453				변경 없음
74	신천동	288-16	대	19.0	19.0	박0정의 3인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453				변경 없음
75	신천동	288-17	대	52.0	52.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6	신천동	288-18	대	100.0	100.0	김0순외 1인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117-3 미성연립 105호				변경 없음
77	신천동	289-7	대	10.0	1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8	신천동	289-13	도	25.0	25.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79	신천동	289-14	전	306.0	306.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0	신천동	291-8	전	380.0	38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81	신천동	291-10	전	90.0	90.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2	신천동	300-11	대	14.0	14.0	안0필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00				변경 없음
83	신천동	301-2	전	244.0	244.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4	신천동	302-6	전	57.0	57.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5	신천동	302-7	전	94.0	94.0	이0선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27번길 8 (신정동)				변경 없음
86	신천동	302-8	전	81.0	81.0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변경 없음
87	신천동	748-2	구	23.0	23.0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없음
88	신천동	749-10	잡	38.0	38.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89	신천동	749-6	잡	1.0	1.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90	신천동	749-12	잡	38.0	38.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91	신천동	749-14	잡	5.0	5.0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합 계				12,376.0	12,376.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60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 명	주 소				
제2026-5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광진흥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800	'26. 07. 16. ~ '41. 07. 15.	여행자센터 (바다행정봉사실) 건립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61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23조)
- 나. 재난수습 등의 업무 담당부서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라.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기관에 소방, 해경, 경찰 추가
(안 제10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23. ~ 8. 12.(20일간)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52)241-7891, 팩스번호 : 052)241-7899
- 전자우편(E-mail): wotks@korea.kr

6.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 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재난 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

4.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5.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 ----- -----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생략)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u>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u>	② ----- ----- <u>재난수습 등의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u>
<신 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울산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② (생략)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② (현행과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4. (생략)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신설>

4. (생략)

<신설>

5. (생략)

③·④ (생략)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같음)

③ -----
----- 구성할 수 있고-----

-----.

1. 2. (현행과 같음)

3. 관할 소방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업무총괄 부서장)

4. 관할 경찰서의 재난 현장대응 지원 부서장

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관할 소방서장(해양재난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관할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 5. (생 략)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1. (현행과 같음)

2. ----- 제6항-----

3. ~ 5. (현행과 같음)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3. 12. 26.>

-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⑨ 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단체·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단체·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

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단체·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중산동 1323-10	신기5길 27	2026. 7. 22	2026. 7. 23.	2018. 5. 10.	신기3길 인근 위치 연계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어물동 873-1	황토전길 201-4	2026. 7. 22	2026. 7. 23.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황토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진장명촌지구 15B 9L	고현로 247	2026. 7. 22	2026. 7. 23.	2001. 3. 22	고현 박상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도로명 부여함
진장명촌지구 15B 10L	고현로 245	2026. 7. 22	2026. 7. 23.	2001. 3. 22	고현 박상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9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6.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제21조(원상회복 등), 제62조(벌칙)

5.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97번지	미상	미상	경작	465	

6. **공고방법:**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란

7. 공시송달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8. 6.(목)까지 자진 원

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되며 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제출기간: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052-241-7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